

전동차 시운전 시행지침

2015. 07.

공항철도주식회사

[목 차]

제1조(목 적)	1
제2조(관련근거)	1
제3조(시운전 구분시행)	1
제4조(구내시운전시행절차)	1
제5조(본선시운전시행절차)	1
제6조(구내시운전)	2
제7조(본선시운전)	2
제8조(안전규정 준수)	2
제9조(검사실적관리 및 보고)	3
제10조(검사기록보존)	3
부 칙	3

전동차 시운전 시행지침

[등록 2012.05.23, 지침 제31212062호]
[부분개정 2015.07.02, 지침 제31215020호]

제1조(목적) 본 절차는 공항철도 전동차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운전 시행 시 시행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'15.7.2>

제2조(관련근거)

1. 전동차관리규정 제12조
2. 전동차중정비지침 제14조 <개정 '12.4.1>

제3조(시운전 구분 시행) 시운전 시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. <개정 '12.4.1>

1. 전동차 구내시운전
2. 전동차 본선시운전

제4조(구내시운전 시행절차) ①전동차 고장에 의해 주행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정비 출장기능시험이 완료된 전동차의 경우 본선 투입 전 구내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.>

②구내시운전 시행자는 검수고 상황근무자에게 구내시운전 실시를 위해 기지 시험선으로 전동차 입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는 기지 운전 취급자에게 전동차 구내시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.>

③구내시운전 완료 후 시행자는 검수고 상황근무자에게 구내시운전 완료 및 필요시 전동차 입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는 기지 운전 취급자에게 전동차 구내시운전 완료 통보 및 전동차 입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>

제5조(본선시운전 시행절차) ①전동차 중요부의 개조 또는 수선으로 본선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정비 완료 후 출장 이전에 본선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. 본선시운전은 구내시운전을 시행하여 전동차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.>

②전동차 중정비 완료 후 출장 이전에 출장 예정일 및 시운전 열차운행을 수송

조정처에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5.23.> <개정 '12.4.1>

제6조(구내시운전)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내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>

1. 60만km검사, 120만km검사, 180만km검사, 240만km검사를 시행하였을 때
<개정 '15.7.2>
2. 차륜을 교환하였을 때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중정비 정기검사 및 차륜교환을 시행한 전동차의 구내시운전은 다음 각 호의 전동차 주요기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구내시운전 작업표준서를 따르며 세부시행항목은 구내시운전 검사표의 해당 항목에 의한다. 단, 전동차 고장 및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구내시운전의 경우 운전모드, 개방운전, 비상구원운전 및 데드맨 동작시험 등은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장치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'15.7.2> <개정 '12.4.1>

1. 운전모드시험
2. 역행 및 제동시험
3. 개방운전 및 비상구원운전
4. 데드맨 동작시험
5. 주행 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

제7조(본선시운전) ①전동차 중정비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전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선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>

1. 60만km검사, 120만km검사, 180만km검사, 240만km검사를 시행하였을 때
<개정 '15.7.2>
2. 차륜을 교환하였을 때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전동차 중요부의 개조 또는 수선을 시행한 경우 본선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. 단, 전동차의 개조 또는 수선사항이 경미한 경우 본선시운전을 생략하고 구내시운전으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'12.4.1>

③본선시운전의 시험방법은 본선시운전 작업표준서를 따르며 세부시행항목은 본선시운전 검사표 해당 항목에 의한다. <개정 '15.7.2> <개정 '12.4.1>

제8조(안전규정 준수) 시행자는 안전관리규정 및 단로기 취급 절차 등에 의거하여 작업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 <개정 '12.4.1>

제9조(검사실적 관리 및 보고) 구내시운전 및 본선시운전을 시행한 후에는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>

제10조(검사기록 보존) 전동차 검사와 관련된 기록은 검수정보시스템에 입력,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말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'12.4.1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